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 입주자모집공고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건본주택 운영 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상황 해제시 까지)
 - ①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에 불응한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② 입장시 전신소독기로 1차 방역을 실시합니다.
 - ③ 본 건본주택은 매주 1회 이상 건본주택 전체 방역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정부정책이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0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08.)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1년이상 거주 하고 있는자가 우선합니다.[김해시 고시 제2020-299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수도권외 비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자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

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홀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쌍용더플래티넘삼계.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전매제한기간은 없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미적용	미적용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7월 18일(월)	07월 19일(화)	07월 20일(수)	07월 26일(화)	08월 08일(월) ~ 08월 10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건본주택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공동주택과 - 27379호(2022.07.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계동 1027-1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4~27층 2개동 총 253세대

[특별공급 132세대(일반[기관추천] 25세대, 다자녀가구 25세대, 신혼부부 50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2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1월 31일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450	01	084.7245A	84A	84.7245	26.9261	111.6506	51.2557	162.9063	45.4345	51	5	5	10	1	5	26	25	2
		02	084.8980B	84B	84.8980	27.3669	112.2649	51.3606	163.6255	45.5276	104	11	11	21	3	11	57	47	4
		03	084.9766C	84C	84.9766	28.2023	113.1789	51.4082	164.5871	45.5697	46	4	4	9	1	4	22	24	2
		04	084.6136D	84D	84.6136	26.3307	110.9443	51.1887	162.1330	45.3750	52	5	5	10	2	5	27	25	2
	합 계										253	25	25	50	7	25	132	121	10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출입구,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계단,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동별 (라인)	공급 세대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8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3.01.26	2023.06.24	2023.11.20	2024.04.16	2024.07.16	2024.10.15		
084.7245A	101동 5호	51	3~4층	2	130,128,000	300,172,000	430,300,000	10,000,000	33,030,000	43,030,000	43,030,000	43,030,000	43,030,000	43,030,000	43,030,000	43,030,000	129,090,000
			5~9층	5	130,128,000	307,072,000	437,200,000	10,000,000	33,720,000	43,720,000	43,720,000	43,720,000	43,720,000	43,720,000	43,720,000	43,720,000	131,160,000
			10~14층	5	130,128,000	313,972,000	444,100,000	10,000,000	3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133,230,000
			15~19층	5	130,128,000	320,872,000	451,000,000	10,000,000	3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35,300,000
			20층이상	8	130,128,000	327,772,000	457,900,000	10,000,000	35,790,000	45,790,000	45,790,000	45,790,000	45,790,000	45,790,000	45,790,000	45,790,000	137,370,000
	102동 5호	51	2층	1	130,128,000	297,872,000	428,000,000	10,000,000	3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3~4층	2	130,128,000	309,372,000	439,500,000	10,000,000	3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131,850,000
			5~9층	5	130,128,000	316,272,000	446,400,000	10,000,000	34,640,000	44,640,000	44,640,000	44,640,000	44,640,000	44,640,000	44,640,000	44,640,000	133,920,000
			10~14층	5	130,128,000	323,172,000	453,300,000	10,000,000	3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135,990,000
			15~19층	5	130,128,000	330,072,000	460,200,000	10,000,000	36,020,000	46,020,000	46,020,000	46,020,000	46,020,000	46,020,000	46,020,000	46,020,000	138,060,000
084.8980B	101동 2호,3호	104	2층	2	130,395,000	300,005,000	430,400,000	10,000,000	3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43,040,000	129,120,000
			3~4층	4	130,395,000	311,505,000	441,900,000	10,000,000	3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44,190,000	132,570,000
			5~9층	10	130,395,000	318,505,000	448,900,000	10,000,000	3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134,670,000
			10~14층	10	130,395,000	325,405,000	455,800,000	10,000,000	3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136,740,000
			15~19층	10	130,395,000	332,405,000	462,800,000	10,000,000	36,280,000	46,280,000	46,280,000	46,280,000	46,280,000	46,280,000	46,280,000	46,280,000	138,840,000
			20층이상	16	130,395,000	339,305,000	469,700,000	10,000,000	3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140,910,000

	102동 2호,3호		2층	2	130,395,000	309,205,000	439,600,000	10,000,000	3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131,880,000	
			3~4층	4	130,395,000	320,805,000	451,200,000	10,000,000	3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135,360,000
			5~9층	10	130,395,000	327,705,000	458,100,000	10,000,000	35,810,000	45,810,000	45,810,000	45,810,000	45,810,000	45,810,000	45,810,000	45,810,000	137,430,000
			10~14층	10	130,395,000	334,705,000	465,100,000	10,000,000	3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139,530,000
			15~19층	10	130,395,000	341,605,000	472,000,000	10,000,000	3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41,600,000
084.9766C	101동 1호	46	20층이상	16	130,395,000	348,605,000	479,000,000	10,000,000	3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43,700,000	
			2층	1	130,516,000	294,084,000	424,600,000	10,000,000	3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127,380,000	
			3~4층	2	130,516,000	305,684,000	436,200,000	10,000,000	3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43,620,000	132,960,000	
			5~9층	5	130,516,000	312,684,000	443,200,000	10,000,000	3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132,960,000	
			10~14층	5	130,516,000	319,684,000	450,200,000	10,000,000	3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135,060,000	
			15~19층	5	130,516,000	326,684,000	457,200,000	10,000,000	35,720,000	45,720,000	45,720,000	45,720,000	45,720,000	45,720,000	45,720,000	137,160,000	
	102동 1호	46	20층이상	5	130,516,000	333,684,000	464,200,000	10,000,000	3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139,260,000	
			2층	1	130,516,000	307,984,000	438,500,000	10,000,000	3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131,550,000	
			3~4층	2	130,516,000	319,684,000	450,200,000	10,000,000	3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135,060,000	
			5~9층	5	130,516,000	326,684,000	457,200,000	10,000,000	35,720,000	45,720,000	45,720,000	45,720,000	45,720,000	45,720,000	45,720,000	137,160,000	
			10~14층	5	130,516,000	333,684,000	464,200,000	10,000,000	3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139,260,000	
			15~19층	5	130,516,000	340,684,000	471,200,000	10,000,000	37,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141,360,000	
			20층이상	5	130,516,000	347,684,000	478,200,000	10,000,000	37,820,000	47,820,000	47,820,000	47,820,000	47,820,000	47,820,000	47,820,000	143,460,000	
			2층	2	129,958,000	295,342,000	425,300,000	10,000,000	32,530,000	42,530,000	42,530,000	42,530,000	42,530,000	42,530,000	42,530,000	127,590,000	
084.6136D	101동 4호 102동 4호	52	3~4층	4	129,958,000	306,842,000	436,800,000	10,000,000	3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131,040,000	
			5~9층	10	129,958,000	313,842,000	443,600,000	10,000,000	3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133,080,000	
			10~14층	10	129,958,000	320,842,000	450,500,000	10,000,000	35,050,000	45,050,000	45,050,000	45,050,000	45,050,000	45,050,000	45,050,000	135,150,000	
			15~19층	10	129,958,000	327,842,000	457,300,000	10,000,000	35,730,000	45,730,000	45,730,000	45,730,000	45,730,000	45,730,000	45,730,000	137,190,000	
			20층이상	16	129,958,000	334,842,000	464,200,000	10,000,000	3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46,420,000	139,260,000	

■ 주택형 약식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7245A	084.8980B	084.9766C	084.6136D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이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공급계약 시 또는 공급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수별로 면적 및 구조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의거하여 지적확정 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지분의 감소는 별도의 공급대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공급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입)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본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공급계약자가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계약자는 공급대금의 10% 완납(2차 계약금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락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본 아파트의 지번,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 적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84D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3	1	1	6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1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1	-	2	
	중소기업 근로자	-	1	1	1	3	
	장애인	경상남도	2	3	1	2	8
		부산광역시	1	1	-	-	2
		울산광역시	1	1	-	-	2
소계		5	11	4	5	2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	11	4	5	25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21	9	10	5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3	1	2	7	
생애최초 특별공급		5	11	4	5	25	
합 계		26	57	22	27	13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1305 2116 1487"> <thead> <tr> <th>구분</th> <th>경상남도 (김해시)</th> <th>부산광역시</th> <th>울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일반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담당과
국가유공자	경남동부 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장애인	경남도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5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우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우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우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7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감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김해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1순위 및 2순위 모두 적용하여 유주택자도 청약신청 가능]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가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정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정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정항목	가정상한	가정구분	점수	가정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7.1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2.07.19(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2.07.20(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07.26.(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8.08.(월)~2022.08.10.(수)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 (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88)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7.26 (화) ~ 2022.08.04 (목)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7.26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p>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김해시 1년 미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 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 중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와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당사 대표번호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자격확인 서류 제출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신청 내용과 대조 등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또한 계약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의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쌍용 더 플래티넘 상계 견본주택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일정 및 장소
자격확인 서류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당첨자(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접수기간 : 2022.07.28.(목) ~ 2022.08.03.(수) 10:00 ~ 16:00까지(7일간)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접수기간에 접수수시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용 더 플래티넘 상계 견본주택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88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 확인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격 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 제출기간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와 동일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자격 확인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발급분 불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청 시 인감도장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 관계 포함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해외장기체류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은 당청자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	부적격 소명자료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자녀수에 포함시켰을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날인 원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여권	세대원 전체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해당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각 세대원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해외장기체류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은 당청자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및 혼인기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자산기준확인서류	본인 및 세대원 전체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건물 : "부동산 소유현황" 자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재산세 과세내역 발급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자산기준산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 자산이 없는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해당화면 캡처(서류 접수 시 청약신청자가 해당 화면을 직접 구현하여 사실관계 확인 필요)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무직자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발급
	○	기본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당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날인 원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여권	세대원 전체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해당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각 세대원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여권	세대원 전체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해당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각 세대원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및 부양가족 산정시 존속배우자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참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자산기준확인서류	본인 및 세대원 전체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건물 : “부동산 소유현황” 자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재산세 과세내역 발급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자산기준산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 자산이 없는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해당화면 캡처(서류 접수 시 청약신청자가 해당 화면을 직접 구현하여 사실관계 확인 필요)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무직자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청약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기본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출생관련 일행이자 확인 필요 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여권	세대원 전체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해당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각 세대원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일반공급 당첨자 (가정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여권	세대원 전체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해당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각 세대원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및 부양가족 산정시 존속배우자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 포함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필수서류 일체	청약자	청약 신청자의 필수 서류 일체 (추가서류 제출 해당자 일시 추가서류 포함)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 발급본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사실서명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의한 무허가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서류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공동(개별)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포함하여 발부]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청약자격 확인 서류	해당 구비서류	청약자격 이상에 따른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 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 (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 (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1)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① 건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7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함.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계약체결 전 서류 검수일 제출필수)

해당자격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개년도 확인)	① 관할읍면동사무소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서	①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③ 해당직장 세무서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p> <p>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p> <p>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중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적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 기준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 2. 수도권 외 6개월 / 3.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합니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Ⅶ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2.08.08.(월) ~ 2022.08.10.(수) (10:00 ~ 16:00) [3일간]	당사 건본주택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88)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됨.
-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발급분 불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으로 직접기재 (본인발급용)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청 시 인감도장 생략
	○		계약금입금증	-	현장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이체
제3자 대리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 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청약자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계약자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양식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계약시 “10103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113-2016-0671-02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계약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공동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최초분양계약자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 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해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분양권 취소 등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 검색 및 제출된 자격확인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 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 수도권외 6개월 /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청약당첨이 제한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본 공동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엘리베이터 홀, 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준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자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 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질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무이자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준공후 담보대출 전환시 DSR 적용에 따라 개인별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 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 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공급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분양권 취소 등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전매 시 양도인, 양수인이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②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매)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30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예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 예정일 및 사전 방문 안내

- 입주예정일 : 2025년 01월 31일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입주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45일~75일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임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함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37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 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Ⅷ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총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	-------	----------	---------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5,000,000	1,500,000	13,500,000
84B	15,000,000	1,500,000	13,500,000
84C	15,000,000	1,500,000	13,500,000
84D	15,000,000	1,500,000	13,5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05.12.02 개정 시행)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공동주택 공급금액에는 미포함 되어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경우 공급계약서와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공급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 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급 및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시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건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의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 비용은 공급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비용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 부담금은 입주시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 책임 및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로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확장 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비확장 세대)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비확장 세대)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비확장 세대)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비확장 세대)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전기/통신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새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은행	발코니확장 (계약금, 잔금)	113-2016-0674-01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의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명 예시 : 101동 1202호 계약자명 → '1011202홍길동' / 104동 101호 계약자명 → '104101홍길동'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별도 유상옵션품목계약)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안	에어컨 설치위치 (실내기)	제조사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안	거실 + 침실1(안방)	삼성전자	3,740,000	374,000	3,366,000
	2안	거실 + 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8,140,000	814,000	7,326,000
84B	1안	거실 + 침실1(안방)		3,740,000	374,000	3,366,000
	2안	거실 + 침실1(안방)+침실2+침실3		6,600,000	660,000	5,940,000
84C	1안	거실 + 침실1(안방)		3,740,000	374,000	3,366,000
	2안	거실 + 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8,140,000	814,000	7,326,000
84D	1안	거실 + 침실1(안방)		3,740,000	374,000	3,366,000

	2안	거실 + 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8,140,000	814,000	7,326,000
--	----	--------------------------	--	-----------	---------	-----------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확장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품목임
- 시스템에어컨은 천장카세트형으로 공기청정판넬이 적용된 제품으로 제조사에 따라 공기청정방식은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평형에 맞는 용량제품이 설치됨
- 옵션시 제한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는 제조사의 도산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는 설치위치, 용량 등이 평형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 내에 설치되며, 실외기실에 환기유닛 설치의 경우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배관으로 인한 환기디퓨져 위치,스프링클러 위치,전등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방식은
 옵션1 : 거실,침실1(안방) 시스템에어컨 제공
 옵션2 : 84A/C/D - 거실,침실1(안방),침실2,3,알파룸
 84B - 거실,침실1(안방),침실2,3

※ 84A/C/D타입 평면옵션 선택시 알파룸에어컨은 주방에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세대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에어컨매립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으며, 옵션금액은 에어컨매립배관 비용을 제외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1선택시 침실2,3,알파룸 에어컨매립배관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침실2,3,알파룸에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선택바라며, 추후 입주자가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실외기가 2단설치가 되어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운전소음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거실,침실1(안방) 에어컨매립배관만 시공되며, 침실2,3,알파룸에 에어컨 설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선택바랍니다.

2. 가전옵션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기본형 (무상)	선택형 (유상)	사양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LG전자 BEY3GTBI	전주택형	770,000	77,000	693,000
주방TV	10인치 주방TV	13인치 안드로이드 스마트 TV	DM-N330V	전주택형	330,000	33,000	297,000
빌트인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프리스탠딩 냉장고장	빌트인냉장고 + 빌트인냉동고 +빌트인김치냉장고 + 키큰장	LG전자 냉장274L(R-A284YM/JM) LG전자 냉동246L(F-A241YM/JM) LG전자 김치220L(K221PR14BR1/L1)	전주택형	6,160,000	616,000	5,544,000

- 상기 별도 계약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상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가전제품)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인테리어 가구 옵션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기본형 (무상)	선택형 (유상)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마감 (주방상판/벽)	주방벽체 : 벽타일, 주방상판 : 인조대리석	벽면+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84A,D	1,760,000	176,000	1,584,000
			84B	2,200,000	220,000	1,980,000
			84C	1,650,000	165,000	1,485,000
거실아트월	포세린타일(400x800)	대형 세라믹 타일(1,200x2,400)	84A/C/D	2,970,000	297,000	2,673,000
			84B	3,410,000	341,000	3,069,000
복도아트월	벽지	대형 세라믹 타일(1,200x2,400) + 시트판넬	84A	5,830,000	583,000	5,247,000
			84B	2,090,000	209,000	1,881,000
			84C	7,920,000	792,000	7,128,000
			84D	5,610,000	561,000	5,049,000
바닥재 (거실/주방/침실)	강마루	포세린타일 (600x600) + 침실강마루(해링본 패턴)	84A	4,840,000	484,000	4,356,000
			84B	4,730,000	473,000	4,257,000
			84C	4,950,000	495,000	4,455,000
			84D	5,170,000	517,000	4,653,000
현관중문	미설치	3연동슬라이딩도어	전주택형	1,430,000	143,000	1,287,000
침실3 붙박이장	미설치	파우더형 붙박이장	전주택형	1,540,000	154,000	1,386,000
거실조명 특화	기본 LED	거실 우울천장 직간접등(디밍기능 포함)	84A/C/D	880,000	88,000	792,000
			84B	1,100,000	110,000	990,000
드레스룸 특화	일부 시스템가구	3면 대형 시스템가구	84D	1,650,000	165,000	1,485,000
주방 특화 (주방벽체+주방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포함)	ㄷ자주방 + 침실4	히든주방 슬라이딩도어 +엔지니어드스톤 상판의 바타입 대형 아일랜드 식탁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의 하부장 + 유리장식장 + 식탁 레일조명	84A	6,270,000	627,000	5,643,000
			84D	6,160,000	616,000	5,544,000
	인조대리석 상판의 아일랜드식탁	히든주방슬라이딩도어 +엔지니어드스톤 상판의 바타입 대형 아일랜드 식탁 + 대형 팬트리 + 유리장식장 + 식탁 레일조명	84C	5,610,000	561,000	5,049,000
			84B	3,740,000	374,000	3,366,000
대형 팬트리 순환동선 특화	현관창고/복도팬트리 각 별도공간	현관 + 복도 대형팬트리(벽판넬타입 시스템 가구 적용)	84B	3,520,000	352,000	3,168,000

- 붙박이장 형태 및 표면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마감(천장,벽,바닥) 별도의 마감처리가 되지 않음.
- 타일의 시공시 상판 및 벽 타일 연결부위에 조인이 발생 됨.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상판의 경우 엠티부위 마감디테일 상 상판과 상판이 만나는 부위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현관 층문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층문 미선택시 신발장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중 유상옵션은 발코니확장형 선택 여부에 따라 일부 선택 품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람.
- 팬트리 옵션의 경우 감지기 반영 등으로 일정 시점 이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지가 불가능 함.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유상옵션 (계약금, 잔금)	164-910060-69204	쌍용건설(주)

- 추가 선택품목의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명 예시 : 101동 1202호 계약자명 → ‘1011202홍길동’ / 101동 401호 계약자명 → ‘101401홍길동’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상가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가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IX **유의 사항**

※ 아래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전 최종 착공신고 설계도서의 평면도, 배치도 및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발생 시 “시행자”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인허가도서와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행자” 또는 “감리자”의 요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행자”의 인·허가 결과에 따름 • 실입주 후 또는 입주하지 않고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복도 등)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입주 후 입주관리를 위한 하자관리 사무실은 “시행자”의 승인 후 설치할 수 있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일부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 등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함 •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은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준공도서에서 제외된 “시행자” 발주의 별도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시공자”와 무관함 •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대유행,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폭동 및 파업, 기반시설공사 지연, 건설업 전반의 급격한 시황변동(원자재 가격 폭등, 자재공급 중단 등),

	<p>추가공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님. 입주 지연 시에는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입주 전 별도 안내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등)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으나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공용)보차도는 준공 이후 입주인이 관리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할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시행자"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인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 하기로 함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행자"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자"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자"의 결정에 따라 단지 내 조경, 주동, 부대시설, 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보행로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레이아웃,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등의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경관조명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가스정압기, 한전패드, 포장, D/A(환기구), 천창(탐라이트), 외부계단, 비상차량동선, 소방차전용구역,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조경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에 오래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시간 경과 시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차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생산이 어려워 미세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시행자"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단종, 품질, 품귀, 해당 제조업체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각종 제품 및 자재의 경우 단종, 제품품질,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및 공급거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의 결정에 따름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및 시트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및 시트 두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색상은 본공사 시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천연자재의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표면무늬가 일정하지 않음. 원목마루 등은 동일 수종이라 하여도 천연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이 일정하지 않고 웅이와 워터마크 등이 있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음. 커뮤니티센터 및 외부시설물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천연석의 경우 패턴과 색상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석재별로 균열의 흔적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과 설명을 참고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아트월 및 벽체에 부착된 타일 및 석재는 시공법에 따라 벽체와 떠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TV설치 등 입주자 필요에 의한 임의타공 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센터에 주의사항을 확인 바람
견본주택 /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모형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전시품 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건립세대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무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에 들어가는 전시품에는 가구 및 조명과 함께 전시조명에 들어가는 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전원은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공용로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은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홈 네트워크 기기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비상방송용 스피커 및 스프링클러 헤드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므로 기본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가구배치 및 지급여부가 다르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p>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조건을 확인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 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건본주택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 등에 표현된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색채는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유·무상옵션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상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 해당제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

■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의 변경이 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전 단지 평형타입별 면적을 합산 후 주거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공용면적은 평형 타입별 벽체공용면적을 반영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단지 내외부 도로(차도 및 보도)의 폭과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수목 및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주관하되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리수거장을 사용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현장여건상 동 및 코아별로 편차가 있을수 있으며,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에서 운영방식을 결정함 •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 등이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근세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VII-0.239g임
단지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크상부, 건물 옥상 등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세대 및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 • 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공원, 근생, 도로,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이 설치 되었거나, 추후 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차량전조등, 사생활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 • 삼계동 1027-12번지는 주변 2.2km 반경 내 25개 정도의 양돈농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가축분뇨관련 악취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주촌면과 삼계동을 연결하는 터널개설(국도 58호선)로 주촌면 재래식 양돈단지에서 발생한 악취가 터널의 흡인효과로 삼계동으로 유입되어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에도 심야 및 새벽시간에 불어오는 북풍·북서풍의 영향으로 한림면과 생림면에서 발생한 악취가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바람 ※돈사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거 10~15배 이내의 악취를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음. • 당 사업지 동측의 지방도와 북서측 주변으로 국도58호선 무계~삼계간 우회도로가 개통예정으로 입주시점 양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매연, 분진, 소음 및 야간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세대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 사업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소음기준(실외 65dB, 실내 45dB이하)에는 충족하더라도 인접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거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시행자"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 옥상에 경관조명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과 CG 및 배치도 등에 표현된 규모 및 위치 등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운영실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되오니, 사전에 건본주택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에서 조망 될 수 있음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조경 공간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동은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주민공동시설, 상가, 문주, 승강기실, 계단실, 옥벽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정화조, 주민공동시설 등)의 배기구, 환기구 및 보일러 배기연도 등이 설치되어, 수증기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지하시설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계획되어 소음, 진동, 냄새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개소,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부대복리시설 (재활용폐기물보관소,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열교환실, 실외기실, 주민공동시설 및 상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비상차로 포함)와 산책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소동, 가로등, 야간 조명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는 동은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상가포함)의 실외기가 동 인근(조경공간 또는 부대시설 상부 등)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부대복리시설(상가포함) 지붕에는 옥상조경이 계획되어 있어 주변 동에 조망권, 소음, 사생활 침해 및 보안상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난간턱 높이, 난간 형태 및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지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옥벽, 석축, 자연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의 모든 급배기구(주차장 환기용, 지하 부대복리시설용, 제연용)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승강기 대수 및 인승, 속도는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치됨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크기가 기준층 대비 축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 시공 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붕구조물은 형태, 색채,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공동주택 지붕 또는 공용 옥상 등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상세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 내 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수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이동통신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 옥탑 및 지붕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위치, 수량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우편함 및 택배보관소의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 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됨 •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디자인, 마감 계획(마감재, 색상), 천장고 등은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옥상구조물 측면에는 줄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 일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및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입면 및 동출입구 등 주동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커튼월록, 문주 특화 디자인, 측벽 특화, 저층부 석재, 동출입구 등이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망계획 시 인근세대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각 동 1층 필로티 또는 1층 인근에는 제연휨통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매연,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옥상 난간대 등을 포함한 각종 옥상 시설물에 대해 강풍발생시 소음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 옥상층에 지하층(지하주차장) 이동통신 및 커뮤니티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인프라(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는 단지계획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함
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접근거리 및 지하주차장을 통한 접근여부 등이 동별로 상이함 (일부 동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접근이 불가할 수 있음)

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및 마감재, 위치, 규모 등은 "시행자"의 요청으로 카탈로그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 및 기능, 구조, 성능 개선, 배관간섭 등으로 인해 평면 레이아웃, 각 실의 기능, 입면, 단면, 천장고,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및 유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및 출입구 등 부대복리시설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시행인가 도서, 견본주택,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시공예정이며, 가구 및 기구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음식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커뮤니티 상부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하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계획(주차구획별 주차대수 비율 포함)은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계단실과 지하주차장이 접하는 개소 수는 각 세대별로 상이함 • 지하주차장의 일부는 PC 구조로 적용될 수 있으며, 부재의 크기, 형태, 특성 등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외기에 면한 주차장 벽체 마감은 블록공간 쌓기 또는 PVC재질 판넬 등 적합한 성능의 재료로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위치는 동별 배치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고, 관련 법령 및 인허가권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함 • 무인택배보관함은 동별 1개소 기준으로 각 동의 지하2층 동출입구 주변에 설치예정이며, 택배함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PC공법 적용 범위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PC로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은 별도 마감을 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동 및 소화전 등의 시설물에 의해 주차 후 차량의 문 개폐 시 간섭 등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차량 경사로의 길이와 폭 등은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행자"의 인·허가 결과에 따름 •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출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휴게시설 및 의자, 테이블 등 가구류는 입주개시 후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며 임의 이동이 불가함 • 단지조경 및 외부 시설물의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적용 위치·구간·면적·자재 등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의 옥상에 녹화 및 조경시설은 실시공 시 설치유무 및 위치와 면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사 중 해당 소방서 및 관할 인허가청의 요청으로 소방차 주차구획 구간 주변에는 식재가 삭제 및 변경 될 수 있음
주출입구 /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출입구(문주), 보행자출입구, 경비실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측량결과 등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및 경비실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되어있지 않음(상가의 진입구와 주차장은 공동주택단지와 별도로 계획됨) • 상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점상가의 업종에 따라 음식 조리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상가의 창호, 외부입면,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입면 및 출입구 등 상가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전면부 보도의 대지 레벨 차이로 인하여 램프/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상가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소방시설 및 관련 시공물 변경 또는 살수장에 발생 시에는 관련 법규에 맞게 재시공 및 추가공사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위 세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 발코니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안목치수 산정 시 옵션마감재, 가구, 걸레받이, 천장물딩 등은 포함되지 않음 (기본형 평면으로 적용) • 세대 내 우물천장 크기, 높이, 형태, 조명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함 • 이웃 세대(좌우/상하부) 확장여부에 따라 바닥, 천장, 벽체 등이 변경되거나 돌출될 수 있음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함 • 단위세대 침실이 승강구에 면하는 경우 승강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체의 재질은 변경(골조, 조적, 건식벽체 등)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출입문의 설치 위치, 폭, 높이, 형태, 열림방향,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 프레임 및 유리 색상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의 우물천장 깊이, 커튼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호수에 따라 카탈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 소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출입구 단차는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욕실, 발코니 등과 실내의 바닥 단차 치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장, 등박스, 커튼박스 위치, 크기,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은 실 시공 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과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벽지, 마루, 타일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신발장, 화장실 샤워부스 및 도기 하부 등 일부 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음 • 일부 단위 세대내 공사용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마감재 설치 전 폐쇄됨 • 침실 등 난방 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재질은 결로, 단열 등에 대한 성능 향상 등을 사유로 본 공사시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천장 속에 설치되는 설비, 골조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내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실 시공 시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인접 세대 및 해당 세대 내부 확장 여부와 주동의 조합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기둥 일부가 돌출되고 마감 및 드레스룸 가구 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축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에서 축세대 /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축벽에 면한 발코니는 관련법규에 따른 벽체 기준면에 따라 실 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로 가전 제품 구매 후 설치 시 설치 전 세대 내부 설치 공간 확보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대형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석재 및 타일, 시트판넬의 나누기는 본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음 •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드레스룸 가구, 주방가구 및 발코니 선반의 길이 및 구성,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 복도 및 거실 아트월 설치 여부 및 위치는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 위치는 모형을 참조하기 바람 • 세대 현관문은 방화 성능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형태 및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음 • 세대별 옵션은 확장 기준으로 작성되어 비확장 시 제공이 불가할 수 있으며, 타입, 평면별로 제공 유무 및 형태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카타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가구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벽지, 마루, 타일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모형과 CG에 표현된 마감재는 실제 색상과 재질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세대 타입별로 여건에 따라 세탁실 선반과 간섭되어 선반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본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세대분전반은 침실 문뒤, 통신단자함은 현관 팬트리에 설치될 예정이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시 타입별 평면 선택형 옵션에 따라 일부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스위치, 전등,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 위치 및 개소, 등기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공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 • 발코니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동절기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창호 개폐 및 채광이 어려울 수 있음 • 실외기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은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해당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용 그릴 설치 부분의 난간턱, 수벽의 높이 및 그릴의 재질, 사양 및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실외기용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p>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기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의 유효폭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내부 마감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 수전이 계획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및 선풍통 등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선풍통, 환기구, 바닥단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입면계획에 따른 장식물 또는 구조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 및 위치는 현장시공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안방앞 발코니는 법규에 맞는 축벽형 스프링클러가 설치됨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되는 창호는 함마톤 난간대 + PL창호로 계획되어 있음 • 외벽 마감재의 변경에 따라 세대 창호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는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디자인과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창호에 설치되는 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재질, 크기, 색상, 난간대 재질/높이 등은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 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8조 4항('21.1.12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세대별 국기봉 꽃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봉 꽃이 장치는 각 동 출입구에 1개소 씩 설치 예정임. 단,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현관문의 열림방향이 다를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건본 제품이며, 본 공사 시 동등사양의 창호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 시 망입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거나 고정형 창으로 설치됨 • 계단실 창은 고정형창호와 환기를 위해 코아별로 창호 사이즈를 고려하여 일부 오픈형(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가 설치될 수 있음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시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각 세대 발코니 내에 완강기 등의 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세대분전반은 침실 문위, 통신단자함은 현관 팬트리에 설치될 예정이나,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탁기, 건조기 등 입주자의 물품 배치에 따라 보일러 점검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 등을 이동해야 할 수 있음 • 식탁등의 경우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식탁 배치 후 그 상부에 설치되며 위치변경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확장 및 비확장, 옵션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전기 배관/배선은 이중천장 내 노출 시공됨 • “시행자”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 옥상에 경관조명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세대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임 • 위생기구류(수전, 도기 등),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기타 마감자재(에어컨, 보일러, 쿡탑, 가스미터기 및 배관, 배수구,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점검구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옵션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은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델이며, 해당 모델 단종시에는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됨. 또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의 수량 및 냉방 용량은 세대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추가 선택품목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참조 • 주방TV폰 후면에 주방 TV폰 전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시공 됨 • 정보통신공사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공동주택) 1등급 수준으로 시공되며, 홈네트워크 공사는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AA등급 수준으로 시공됨 (별도의 인증은 없음) • 건본주택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음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세대 내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욕실 배기는 외부 직배기방식이며, 배기팬은 고정압 정풍량 방식으로 외부 환경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됨 (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변경 및 대피공간 내 천장마감, 발코니 창호 높이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음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함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시 각 세대 내부에는 소방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조정되어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장비가 설치됨 • 수도법에 따른 절수등급 의무화 설비위생기구류(일부 수전/양변기)에 대하여 기준등급의 시험수압 및 수량을 준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1층 및 필로티 세대 욕실 천장에는 급수급탕분배기가 2개 (상부세대 & 해당세대) 설치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학교관련 유의사항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 단지 입주세대의 초등학교 통학학교(군)는 신명초등학교입니다. (단, 학군 내 학교설립 추진 상황 및 학생수 증감 등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학생배정여건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 입주세대의 고등학교 진학 시 감해시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가 진학 대상 학교입니다.
- 초등(중)학교 : 김해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ghedu.gne.go.kr/ghedu/intro.do>)] 문의
- 고등학교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coimsl.jsp>)] 문의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 기타 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부고시 제 2021-832호에 따른 제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며, 제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토목,기계감리	소방,전기,통신감리
회사명	경호엔지니어링	(주)이정이앤씨
감리금액	₩1,135,739,000	₩377,510,000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7m 이상	2.7m 이상(지하 2층), 2.3m 이상(지하 1층)	2.7m 이상(주출입구), 2.3m이상(부출입구)

■ 분양보증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82022-101-0008300호	₩81,025,07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흡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인 ㈜해안파트너스,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및 시공사 쌍용건설(주),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해안파트너스가 부담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위탁자 ㈜해안파트너스와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을”)에게 본 공급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해안파트너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하자보수책임(미시공, 오시공, 설계상의 오류 포함)은 위탁자 ㈜해안파트너스 또는 시공사 쌍용건설(주)이 부담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에 대한 재판관리 업무 및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발생하는 의무(분양계약 해제/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 채무 이행, 소유권이전 관련 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는 위탁자인 ㈜해안파트너스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및 유의사항과 광고 등을 통해 명기된 사업지 주변기반(예정)시설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기타 시행자 사정 및 경제여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체 내지 철회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해안파트너스가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으로부터 시행위탁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중도금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관리형 토지신탁 내용은 본 모집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
회사명	주혜안파트너스	우리자산신탁(주)	쌍용건설(주)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 11층 우측 (부전동, 금웅프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성빌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신천동)
등록번호	180111-1343564	110111-2003236	110111-0220395

■ 사이버 견본주택 :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 홈페이지(<https://www.쌍용더플래티넘삼계.kr>)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88

■ 분양문의 : 1899-679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 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